

**2026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
자체선발기준(안)**



2026. 08.

입학학생처 학생지원팀

I

목적 및 지원대상

1. 목적 :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(주거 관련 비용)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
2. 지원대상 :

-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(대학원생 제외), 만 39세 이하 미혼인 자
- (소득)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
 - ※ 학생 소속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부모 모두의 주소지가 아래와 같이 원거리 미인정 지역*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거리 인정(캠퍼스 위치별 상이)

II

한국장학재단 기준

1. 성적기준 :
 - 가. 신·편입생, 재입학생 :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 - 나. 재학생 :
 -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(70/100점) 이상을 획득한 자
 -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 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(백점 환산 점수)
 -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
 - 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2. 소재지 인정기준 : 학생 소속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부모 모두의 주소지가 아래와 같이 원거리 미인정 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원거리 인정

대학소재지	부모주소 원거리 미인정 지역
경기 평택시	[수도권], 충남 아산시 · 천안시

Ⅲ 대학자체 우선지원 기준

1. 우선지원 기준 : 우리 대학에 교부된 주거안정장학금 예산을 초과하는 지원 대상자 발생 시 아래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선발

※ 선발 결과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우선지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선발된 장학생 모두 지원 가능

2. 우선 지원자

순위	1	2	3	4	5	6
대상	비(非)기숙사생	다자녀	기초생활수급자	차상위계층	성적높은순(백분위)	학년 낮은순

3. 제외 기준 :

- 가. 계절학기 수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계절학기 중도 수강취소자
- 나. 2026년 3월, 2026년 9월 중 학적변동자(자퇴, 제적, 휴학 등)
- 다. 대학별 사전 공지한 일정(지급요청서 제출 등) 미 준수 월에 대한 지급 제외
- 라. 그 외 재단이 정한 자격요건에 미 해당시 제외

Ⅳ 지원금액

1.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비용
2. 주거 관련 비용 : 임차료*(전·월세, 보증금** 등), 주거 유지·관리비(수선유지비, 공동주택관리비 등), 수도·연료비(상하수도, 전기, 열, 등유, 연탄 등), 주택임차·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
- 단,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(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)
 - 임차료는 주택, 기숙사,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
 - 보증금의 경우 「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」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(연 4%)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

3. 학 기당 4개월분 지급 가능

- 1학기 : 3 ~ 6월
- 2학기 : 9 ~ 12월

4. 계절학기 수강자는 7~8월분(하기), 1~2월분(동기) 지급 가능

□ 기타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에 따름.

